

장도소득세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실시

글 | 정태희 세무사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의무자 별로 구분하여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즉, 법인사업자는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①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영리법인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모두 해당되며, ②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및 과세유형여부(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 및 수취의무자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이해는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① ERP 시스템 ② ASP 사업자 이용(사용료 지급) ③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e-세로 시스템(사용료 없음) 등을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현행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물론이고 수정세금계산서(2010년 이전 발급분에 대한 수정분 포함)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 및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할 때마다 발행하고 늦어도 거래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선일자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수신방법은 공급받는자의 수신함(=이메일계정)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시키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7.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지역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에 다음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지역전송 : 0.1%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미전송 : 0.3% (발급일 과세기간의 말의 익월 15일 이후). 미교부인 경우 2%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함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위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사전 준비사항은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선택 및 회원가입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 ③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회원가입(「e-세로」) ④ 거래처의 정확한 E-mail 주소 확보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사전 준비 사항도 ①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 받아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회원가입, 특히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세로」에는 반드시 회원가입 할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E-mail 주소를 준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을 위하여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는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9.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국세청 이세로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검증을 완료한 후 전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